'광주 5원칙' 다시 돌아보기: 용서와 화해를 중심으로

정 근 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문제 제기

올해(2023년) 초에 우리는 한국의 민주화운동사 및 5·18 기념의 역사에서 간과할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을 연이어 겪었다. 하나 는 지난 2월 19일 5·18민주화운동 부상·공로자회와 특전사동지회가 개최한 '대국민 공동선언식'이고, 다른 하나는 3월 31일 전두 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의 광주방문과 사죄였다. 5·18민주화운동 부상·공로자회와 특전사동지회는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이분 법적 도식을 떠나 계엄군으로 참여했던 특전사 장병들도 피해자라는 인식하에서 5·18과 관련하여 광주에서 사망한 병사들이 묻혀 있는 국립묘지와 국립5·18묘지를 함께 참배하였고, 또 '포용과 화해와 감사'라는 타이틀 아래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 선언에 대하여 5·18 유족회는 소극적이었고, 5월 어머니회와 시민단체협의회는 반대했으며, 광주시의회도 함께 할 수 없 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전우원이 광주를 방문하여 5.18묘지를 참배하고 자신의 조부를 비판하면서 대신 사 죄를 했을 때, 5월 어머니회는 이를 따뜻하게 맞아주면서 사죄를 수용했다. 그의 행위가 단지 가족간 불화의 산물이라고 치부할 것 은 아니며, 비록 손자이기는 하지만 전 대통령 가족이 행한 최초의 사죄라는 점을 평가하여 전반적으로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이 글은 최근의 용서와 화해 논쟁에서 시민들의 지혜로운 선택를 이끌내는데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진실, 책임, 명예회복, 배상, 기념'으로 구성되는 광주 5원칙의 정립과정과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최근의 상황을 반영하여 이 원칙들의 현재적 의미와 쟁점들을 논의하며, 사죄와 용서, 그리고 화해의 상호관계에 관한 논의들을 검토하고자 한다.1

민주화와 광주 5원칙

한국의 과거청산의 역사에서 '광주문제 해결 5원칙', 줄여서 '광주 5원칙'은 매우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이정표이자 이후의 이 행기 정의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나침반이었다. 이 원칙은 1980년 이후 약 10여 년간 전개된 5월 운동의 중간결산이자 현실정치 에 대한 대응의 산물이었지만, 매우 보편적인 이행기 정의의 원칙이었음을 당시에는 별로 깨닫지 못했다. 이 원칙에 조응하여 1995 년에 제정된 광주특별법은 12·12로부터 5·18에 이르는 기간에 행사된 국가폭력의 주체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내리게 한 법적 기초 였고, 2000년부터 본격화된 이행기 정의 프로젝트들의 이상적 규범이 되었다.

5·18 20주년을 기념하여 광주광역시가 편집한 『5·18민중항쟁사』는 5·18과 5월 운동에 관한 당시의 생각들을 집대성한 책인 데, 필자는 이 책에 수록된 「청산과 복원으로서의 5월운동,이라는 글에서 '광주문제 해결 5원칙'의 정립 과정과 그 내용에 관하여 언급한 바 있다. 광주 5원칙의 핵심은 책임자 처벌을 명예회복이나 배보상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이며, 개별 원칙들의 의 미나 내용뿐 아니라 원칙들간의 관계 및 우선성을 초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원칙들 중에서 가장 우선하고 또 다른 원칙 의 전제가 되는 것은 진상규명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1990년 3당합당의 댓가로 주어진 보상이었다. 1990년 8월 광주보상법이 제

¹⁾ 이 글은 5·18 40주년을 계기로 썼던 〈5월운동의 성과와 한계: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 사이에서)(2020)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죄문제와 포획상 전시에 관한 〈한국 국가폭력의 제도적 청산과 기억문화-사죄와 용서를 중심으로〉(2022), 그리고 작년에 전남대 5·18연구소에서 구두로 발표한 (이행기 정의와 진실, 그리고 화해: '광주 5원칙'을 다시 성찰하기)의 연장선상에 서 있음을 밝혀둔다.



정되었다. 이에 대한 광주지역사회와 김대중의 대응은 '광주문제 해결의 원칙'론이었다. 이런 문제의식이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5·13 담화를 계기로 구체화되어 광주 5원칙이 정립된 것이다.

1998년 김대중 정부의 출범과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출범은 민주화운동과 5·18정신의 전국화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간 주할 수 있는 정치적 지표였다. 여기에는 광주 5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기억과 기념, 즉 5·18묘지의 국립묘지화나 5·18의 국가기념 일 지정 등과 같은 5·18 정신계승 사업이 포함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4·3특별법 제정, 의문사위원회와 민주화운동보상 심사위원회를 출범시켜 이행기 정의 프로젝트들이 시작되도록 했다. 2001년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출범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보수정당의 탄핵을 딛고 2004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법, 200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을 통과시켰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광주특별법과는 달리 책임자 처벌을 제외하고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즉 응보적 정의보다는 회복적 정의에 기초한 것이었다. 특히 진실 화해 기본법은 위원회의 명칭에서 드러나듯이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의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가해자의 양심적 고백과 처벌의 면제, 화해로 이어지는 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 그랬는가?

한국의 이행기 정의 프로젝트들은 대체로 진보정부에서 시작하여, 보수정부에서 종료되었기 때문에 원래 계획했던 마무리 작업 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프로젝트들은 대체로 대통령과 국회의 균형, 그리고 여야의 균형을 추구했기 때문에² 상당한 내적 갈 등이 상존하고 있었다. 이런 정치적인 요인 외에 사죄와 용서를 낯설어 하는 문화적인 요인이 작동한 듯 하지만, 이에 관한 경험적 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 2005년을 전후하여 뉴라이트라고 불린 '젊은 사이버 보수'집단이 출현하고, 이들의 5·18 폄훼가 시작되면서 상 황이 복잡해졌다. 그 폄훼는 주로 지역주의적 차별과 혐오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점차 이들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었다. 2008년 이 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어떻게 부를 것인가에 관한 논쟁이 시작되었다. 이 노래가 북한정 권을 청송하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5·18 당시 광주에 파견되었던 북한군의 묘지가 북한에 있다거나 시민군들이 사실은 북한에서 파견한 특수요원이라는 주장이 나타났다. 2013년 박근혜 정부의 출범으로 보수 정부가 연속되자 5·18에 대한 왜곡은 더 심해져 보 수 정치인들조차 여기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면서 혐오 왜곡 발언을 반복하였다. 5·18 진실의 부인과 왜곡은 2017년에 발간된 전두 환 회고록에서도 반복되었다. 그는 여기에서 5·18을 1980년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폭동으로 규정하고, 고 조비오 신부가 주장하는 헬기 사격은 거짓말이라고 썼다.

5·18 왜곡과 폄훼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 이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부에서는 1997년 대통령 선 거 직후에 이루어진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서 찾기도 한다. 그 사면이 5·18 국가폭력에 대한 인정과 진솔한 사죄 없이 이 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맥락에서 광주 5원칙의 하나인 책임의 문제를 너무 처벌중심주의로 사고했던 것이 아닌 가라는 반성을 하게 된다. 5·18 진실논쟁은 임을 위한 행진곡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와 함께,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체계적인 비판 작업을 자극했다. 동시에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 진행되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5·18 왜곡은 5·18의 진실을 다시 묻게 만들었다. 진실이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정립되는가?

2019년 제정된 5·18진상규명법은 광주 5원칙 중에서 가장 우선하고 다른 원칙의 전제가 되었던 진실의 원칙을 재확인하는 것 이었다. 이 법률은 제1조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 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그동안의 왜곡과 은폐에 대한 대 응 입법임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제3조에서 진상규명의 범위를 규정하였는데, 인권침해분 아니라 군에 의한 발포 경위 및 책임 소 재, 군에 의한 헬기 사격, 희생자 암매장, 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등 구체적인 쟁점들을 열거하였다. 5·18 40주 년이었던 지난 2020년, 필자는 「5월운동의 성과와 한계: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 사이에서 라는 글에서 5월운동이 거둔 성과를 광주 5원칙의 개별 항목들 각각의 차원에서 검토했다. 특히 왜곡과 폄훼의 상황에서 제1원칙인 진실규명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될

²⁾ 이행기 정의를 실천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한국은 상설 조직이 아닌 한시적 조직으로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용하였고, 위원회 구성은 3권분립을 반영하여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위원을 추천하거나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국회 추천은 항상 여 야 동수로 이루어지므로 정파성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수 밖에 없는 맥락에 주목하였다.

광주문제의 해결이라는 맥락에서 진실은 제1원칙으로서 형식상 마땅한 위상을 부여받고 있었으나 내용적 구체성을 확보하지 못 하고 있었다. 이 원칙이 정립되던 1993년 당시에 진실은 주로 국가폭력과 피해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했으므로 항쟁 주체 들에게는 명확한 것이었지만, 국가폭력의 의도나 구체적 행사의 실태는 여전히 모호했고, 사회적 인정 또한 불완전한 것이었다. 항 쟁의 진실은 1985년에 간행된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나 1990년에 출간된 참여자 구술채록 『광주오월 민중항쟁 사료 전집」에 담겨 있거나 1988년의 국회청문회에서 밝혀진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2005년 이후 뚜렷해진 5·18 왜곡과 폄훼 사건들을 통해 인식되었다. 진실은 "이미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명제는 의심스러운 것이 되었으 며, 반대 명제들에 대한 비판의 과정에서 정교화되는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것은 발포명령이나 암매장에 관한 오래된 질문 이나 북한 특수요원 개입설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질문 모두에 대한 응답을 포함해야 하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구성된 다는 인식이 자리잡았다. 이와 함께 책임의 원칙은 책임자 처벌뿐 아니라 사과의 문제를 포함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진실은 사회 적 인정 뿐 아니라 국가폭력의 책임자 스스로의 인정과 사죄를 포함해야 완성된다는 점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결국 5·18 왜곡과 폄훼는 광주 5원칙의 제1원칙인 진실의 원칙과 제2원칙인 책임의 원칙을 다시 정립하도록 유도했다. 진실은 질문에 대한 응답이며 부인에 대한 적극적 비판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책임은 처벌이라는 부정적 요소뿐 아니라 인정과 사죄라는 긍정적 요소로 구성되는 것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처벌과 사면 이후에 발생한 진실에 대한 부인과 책임 회피는 처벌뿐 아니라 사죄를 논의해야 할 필요성을 제고시켰다. 또한 전두환의 사죄없는 사망은 "끝내 사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용서는 어떻게 가능 한가?"라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행기 정의의 '원칙'은 국가마다 약간씩 다르다.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이행기 정의는 국가폭력의 역사적 진실을 둘러싼 가 해자 및 국가권력의 접근방식에 대한 피해자 공동체의 대응의 산물이며 동시에 정부와 희생자 공동체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흥미 롭게도 이행기 정의의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는 대체로 진보정부에서 시작되어 보수정부에서 종료되었는데, 원래의 계획대로 진행 되지 않는 단점이 있었다. 이의 원인은 보수정부가 과거의 가해책임에 부분적으로 자유롭지 못하거나 득표전략 또는 재정적 부담에 민감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행기라는 용어는 몇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첫째, 이행기가 언제인가를 특정하기 어렵고, 둘째, 단일한 이행이 아닌 복 합적 이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이행기 정의는 2000년, 2005년, 2020년 등 세 번의 파도를 타고 제도화되었다. 또 한 정의에 대한 두 가지 다른 개념이 존재한다.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이다. 응보적 정의는 일방적인 처벌을 통해 정의를 회복하 는 것을 말하며, 회복적 정의는 쌍방의 과정에서 공유된 가치-합의를 재확인함으로써 정의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로부 터 후자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범죄 심리학뿐 아니라(Wenzel, 2008), 정치사회적인 이행기 정의 프로젝트에 적용된다. 송에스터 (2020)는 이행기 정의에서의 배상의 의미를 확장하여 사고할 것을 주장했다. 그녀는 이행기의 배상이 피해자 개인에 대한 사법적・ 교정적 정의를 벗어나, 사회적 인정과 신뢰, 연대 등 보다 넓은 차원의 정의를 추구하는 정치적 프로젝트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 고 보았다.

책임원칙의 의미 확장: 사죄와 용서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의 취임 이후 광주 지역사회는 '이제 용서하고 화해할 때가 되었다'는 정치적 압력에 시달려 왔다. 그때마 다 광주의 응답은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책임자의 사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사죄없이 사면된 전두환 전 대통령 에 대한 사죄 요구는 매우 강력한 것이었다. 이것은 그가 자서전을 통해 진실을 부인하고, 특히 헬기 사건을 둘러싸고, 고 조비오 신 부을 모욕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련된 명예훼손 소송 국면에서 전두환에 대한 사죄요구는 최고조에 달했다. 급기야 2019년 12월

12일 그의 무릎을 꿇고 철창에 갇힌 가상적 사죄상이 광화문에 전시되었고, 2020년 4월에는 광주로 옮겨져 전시되었다. 시민들은 그에게 벌을 가하는 이벤트에 참여하였다.3

필자는 5·18 진상규명위원회가 출범할 때, 당시 쟁점으로 부각되어 법률로 규정된 사항들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2·12와 5·18의 '수괴'로 불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진솔한 사죄를 이끌어내는 것이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이후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어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 고 사죄를 하지 않고 있던 그는 '포승에 묶인 전두환'상으로 재현되어 서울과 광주에서 공개적인 놀림감이 되었지만, 끝내 사죄를 하지 않고 2021년 11월에 사망했다. 그러나 그는 이 때문에 제대로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는 수모를 당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진실 부인과 대조적인 것이 노태우 전 대통령 가족의 태도이다. 전두환 포획상이 제작되기 이전인 2019년 8 월 23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이 5·18국립묘지를 찾아 분향하고 사죄했다. 그는 12월 6일에도 광주 오월어머니집을 연 락 없이 방문했다. 그는 "아버지를 대신해 사죄한다. 아버지께서 직접 광주의 비극에 대해 유감을 표현해야 하는데 병석에 계셔서 여의치 않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2020년 5월 29일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그는 아버지 이름으로 된 조화를 헌화한 뒤 분 향했다.⁴ 이어 2021년 4월 21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최초의 참배에 대하여 광주 시민사회는 대체로 긍적적인 반 응을 보였으나, 2011년에 출간된 '노태우 회고록(上)'의 내용이 알려지면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되었다.⁵ 5:18 기념재단과 5:18 3단 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진정성 있는 사과와 행동'을 요구했다. 최종적으로 2021년 10월 그의 장례식에서도 가족들 은 유언형식으로 사죄의사를 전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노태우 전대통령 사망과 장례식에 관련한 언론보도를 검토하면서 일부 언론들은 유언 형식의 사죄를 통한 용서와 화해를 강조한 반면, 다른 언론들은 직접 사죄가 없었으며, 2011년에 출간한 회고록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5·18기념재단 등 5·18단체는 노태우 씨가 사망하자 "본인의 사죄는 물론 진상규명 관련 고백과 기록물 공개, 왜곡·조작된 회고록을 교정하지 않음으로써 끝까지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⁶

또 다른 사죄의 사례가 있다. 2020년 8월 19일,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립5·18민주묘지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 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참여 전력과 과거 미래통합당의 '막말'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확대 당 시를 되돌아보며, "알고도 침묵하거나 눈감은 행위, 적극적으로 항변하지 않은 소극성 역시 작지 않은 잘못이다. 역사의 법정에선 이것 또한 유죄"라고 자신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역사의 화해는 가해자의 통렬한 반성과 고백을 통해 가장 이상적으로 완성될 수 있지만 권력자의 진심 어린 성찰을 마냥 기대할 수는 없는 형편에서 제가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고 말했다.⁷ 내용상으로는 가장 진전된 사죄였지만, 정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런 사례들은 사죄가 용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체와 맥락, 그리고 진정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려준다. 또한 사죄를 하 면 용서를 한다는 조건적 용서론이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화해의 가능성과 한계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함께 화해를 달성하는 것은 오랫동안 한국의 시민들이 가진 염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1980년에 의해 결정적으로 구조화된 정치적 분열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원한의 정치를 종식시키고 싶은 열망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과와 용서의 문제는 또다른 하나의 과제인 화해의 문제로 이끌어가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들이 자동적 연쇄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³⁾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정근식(2022)을 볼 것.

⁴⁾ 최경호, 중앙선데이 2020.7.18

⁵⁾ 여기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유언비어가 진범이다. 경상도 군인들이 광주시민들 씨를 말리러 왔다는 등 유언비어를 듣고 시민들이 무기고를 습격했다"고 적혀 있다.

⁶⁾ 민주언론시민연합, 2021.11.2.

⁷⁾ KBS 2020.8.19.



데에 문제가 있다. 5.18이 파생시킨 광주문제는 '광주 5원칙'으로 표현되는 정의의 문제, 즉 피해자와 가해자인 국가권력과의 화해 이외에, 피해자와 입장을 달리하는 다른 국민들과의 화해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이를 인식하고, 1992년 대통령 선거 당시 거국내각론을 거론했으며, 1997년에는 연합정치로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였다.

용서와 화해는 남아프리카 진실과화해위원회의 영향, 교육 및 사회 심리학자들의 옹호, 비판적 법률 연구에서 응보적 정의에 대 한 비판으로 인해 이행기 정의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화해와 용서의 문제는 사회정치적일뿐 아니라 종교적 성격이 짙은 논제이다. 인간을 근본적으로 '종교적 인간'으로 규정하는 융의 분석심리학에서 화해와 용서의 문제는 심리학과 종교 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해명된다(윤영돈, 2018).

사죄와 용서의 배후에는 화해와 통합이라는 덕목이 놓여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에는 3가지 서로 다른 스케일의 화해문제가 쟁 점으로 부각되어 있다. 첫째는 국내 정치에서의 화해의 문제가 있다. 한국정치는 원한의 정치가 지속적으로 반복될 뿐 아니라 점점 강화되고 있다.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퇴임 과정 또는 퇴임 후에 모두 불행했는데, 이는 자신의 과도한 욕망이나 과오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통령제와 실질적 양당제가 가져오는 승자독식의 논리, 그리고 정치적 보 복의 문화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기억이 강하게 살아남아서 다음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도 관찰된다. 강한 대통령일수록 불행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는 통합의 정치가 아닌 균열의 정치가 지배적이었기 때 문이다. 오늘날까지도 역대 대통령들에 대한 평가가 극심하게 다르며, 현재에도 이런 원한의 정치가 관찰된다.

1998년 수평적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그의 정치적 경쟁자이자 후임자인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 정치적 보복 을 당하지 않았는데, 이는 김대중 정부의 정치연합적 성격뿐 아니라 그의 화해철학에 기인한 바 크다. 그러나 이를 제외하고는 보수 와 진보의 정치적 교대기에는 거의 대부분 정치보복성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원한의 정치가 종식 되려면, 승자의 패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패자의 승자에 대한 인정과 협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정치문화는 이를 매우 낮 설게 생각한다. 따라서 법을 내세운 처벌보다 정치적 타협과 공존의 철학이 자리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난 40여 년간 한국 의 민주화를 이끌어 온 '광주'가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

둘째는 남북 간 화해의 문제이다. 한국전쟁의 발발책임이나 전쟁희생자 배상문제를 비롯하여 남북관계를 긴장과 갈등으로 몰고 갈 위험 요인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2000년 남북정상회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등은 화해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다. 김병로(2019)는 한반도에서 왜 화해가 진전되지 않고 공전하는가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화해 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절차 혹은 과정이 무엇인지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해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는 화 해를 위해서는 상호피해 인정, 사과, 추모, 진실확인, 보상, 용서 등 핵심요소가 필요하고 일련의 절차와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은 역설적이며 역동적인 현장이다. 남북 간 화해는 정상회담을 통해 진전되는 듯 했으나 현재는 완전히 막혀 있고. 과거의 전쟁의 유산에 관해서는 초보적인 절차마저 시작되지 않았다.

셋째는 역사적 쟁점으로 일제의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 측의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의 문제이다.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처리에서 1965년의 한일 국교정상화가 일차적 화해라면, 1990년대 식민지배에 대한 일본 정치인들의 반성과 한국의 응답이 이차적 화해였다고 할 수 있다. 일차적 화해는 동아시아 냉전분단체제의 필요성 때문에 강요된 측면이 있었다면, 이차적 화해는 세계적 탈냉전의 분위기에 서 자발적인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그러나 이후에 발생한 일본의 수정주의와 강제동원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 역 사인식의 차이가 심화되면서 한일 협력은 난관에 봉착했고, 이를 둘러싸고 한일 간에 그리고 한국 내부에서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었다.

화해에 관한 이론적 모색으로 킴리카와 바쉬르가 편집한 책을 들 수 있다. 여기에서 반 앤트베르펜(2008)은 화해를 종교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 그리고 개인적인 것과 집단적인 것이라는 두 차원으로 나누고, 개별적 화해에서 관용(tolerance)을, 집단적이고 세속적인 화해에서 시민적 신뢰와 사면(civic trust and amnesty)을 들었다. 바쉬르(Bashir, 2008)는 화해의 정치를 심의 민주주의와 연결시켰 는데, 단순한 다수결이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통합하는 것이다. 그에게 화해란 특정한 권력관계에 배태된 집단 내 과정(intergroup process)으로, 첫째, 집합적 기억과 배제의 역사를 말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역사적 부정의를 공적으로 인정하며, 셋째 책임을 받아 들이고 사죄를 하는 3단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보았다.



우리는 화해나 용서 담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선더스(Saunders, 2011)는 용서를 선 험적으로 좋은 것으로 간주하거나 화해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서를 내세워 피해자들의 분노 를 억압하게 되면, 심각한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반스(Evans, 2018)도 이행기 정의의 맥락에서 화해를 촉진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것은 순수한 화해의 사례를 찾기 어렵고, 화해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실질적인 사회변동을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현상유지에 도움을 줄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사과, 용서, 화해는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경험적 근거가 축적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하잔(Hazan, 2006)은 공개적인 사 과의 실질적 효과를 포함한 이행기 정의의 주요 수단들의 효과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결론

5·18 정신(또는 광주정신)은 지난 40여 년간, 1987년의 6월항쟁을 비롯하여 한국 민주화를 이끌어 온 사상이자 철학이었다. 이 것은 또한 한국 민주주의가 후퇴할 때 이를 막아내는 보루이자 방파제 역할을 했다. 이것은 1990년 3당 합당 직후에 제정된 광주 보상법 및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5·13 담화에 대응한 '광주문제 해결 5원칙'으로 구체화되었으며, 책임자 처벌을 가능케한 광 주특별법 제정을 추동하여 한국의 이행기 정의 모델을 정립하도록 한 정치적 에너지의 원천이었다. 광주문제 해결의 제1원칙은 처 음부터 완전한 진실규명이었으나 정치 현실에서는 보상, 기념, 책임자 처벌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전두환 등 국가폭력의 최고 책 임자들에 대한 사면으로 5월 운동이 일단락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2000년부터 한편으로는 4:3특별법 제정 등 한국의 이행기 정의 프로젝트들이 본격화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됨으로써, "5월에서 통일로"라는 광주의 염원, 즉 또 다른 차원의 민족적 국가적 화해 프로젝트가 시작될 수 있었다.

그러나 2005년 무렵에 뉴 라이트에 의해 5·18에 대한 폄훼가 시작되고 더 나아가 보수화와 민주주의의 후퇴 국면에서 진실을 왜곡하며, 사면까지 받았던 국가폭력의 최고 책임자가 진실을 부인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5·18 단체와 광주 시민사회는 새로운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광주 시민사회는 '광주 5원칙' 중에서 가장 선행하면서 나머지 원칙들의 철학적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진실의 원칙으로 되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2019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약칭 5·18진상규명법) 제정은 추상적인 진실이 아닌 구체적 쟁점들에 대한 응답을 필요로 하는 5월 운동의 두 번째 국면, 즉 '포스트 5월 운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원점으로 되돌아온 진실의 원칙은 나머지 원칙들 모두를 내적으로 포괄하는 총체성을 지니며, 이 때문에 제2원칙인 책임 의 원칙을 성찰하고 보완할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제1국면에서의 책임의 원칙은 '처벌'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면, 제2국면에서의 책 임의 원칙은 사죄와 용서의 문제를 수반하는 것이었다. 책임의 문제는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포함하고, 사죄의 문제는 사 죄의 여부뿐 아니라 범위, 그리고 그것의 진정성까지를 질문하는 것이다. 책임과 사죄의 범위는 1980년 당시의 국가폭력에 대한 사죄뿐 아니라 2005년 이후의 폄훼와 왜곡에 대한 사과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관련된 더 중요한 문제는 사죄가 용서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이다. 사죄는 용서의 전제조건이며, 사죄와 용서는 화해를 촉진하고 자연스럽게 사회통합의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매우 적기 때문에, 그런 인과적 연쇄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를 찾기 쉽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조건부 용서인가, 아니면 무조건적 용서인가라는 질문은 실 존적 종교적 요소를 지니고 있어서 강요할 수 없고, 개인적 결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용서의 사회적 맥락과 시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아무 때나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용서는 용서하기 어 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과 개인적 결단 뿐 아니라 집합적 결단이 가능할 때, 용서를 해야 한다는 판단 사이에서 갈 피를 잡기 힘들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집합적 결단이 가능할 때 용서가 가능한 것이 아닐까?

광주 시민사회는 5·18 당시부터 보다 현실적인 입장과 근본적인 입장으로 분화되어 있었지만, 인간적 존엄성에 기초한 사회적

연대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였고, 항쟁 종료 이후에는 여기에 '죽은 자와 산 자들의 연대'를 추가함으로써 역사공동체를 창출하였 다. 여기에서 배양된 역사적 정치적 감수성은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시민 대토론회를 통하여 이를 극복하는 지혜를 만들어 냈다. 우리 사회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 '5·18 책임'과 용서의 문제가 좀더 진전된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강남순. 2017. 『용서에 대하여: 용서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파주: 동녘.

강효인·박명림. 2020. 「과거청산과 과거극복: 화해와 치유로의 전환을 위하여」, 『인문사회21』 11(6), 2769-2784.

고재백·오유석·허고광 편. 2022. 『용서와 화해 그리고 치유』, 서울: 새물결플러스.

김귀옥. 2020. 「김대중 평화사상의 형성과 정치적 실천」, 『통일과평화』, 12(2), 7-51.

김귀옥. 2022. 「김대중의 화해의 사상: 형성과 실천」, 『통일인문학』 90, 159-196.

김병로. 2019. 「화해는 어떻게 가능한가?: 이론적 고찰과 한반도에의 적용」, 『통일과 평화』, 11(2), 39-74.

김상덕. 2020. 「5·18민주화운동 40주년, 우리는 무엇을 보았고 보지 못했나: '세기의 재판'을 통해 살펴보는 정의와 화해의 과제」, 『한국기독교와 역사』 53, 95-125.

김학재. 2017. 「김대중의 통일·평화사상」, 『통일과평화』, 9(2), 59-90.

김현수. 2011. 「조건적 용서와 무조건적 용서의 화해를 향하여 -블라디미르 얀켈레비치, 자끄 데리다, 폴 리꾀르의 용서이론에 대한 고찰」, 『한국 기독교신학논총』, 76, 275-299.

노명환. 2020. 「김대중 화해 사상의 특수성과 보편성: 이분법의 극복과 '다양성 속의 통일'의 변증법,, 『통일과 평화』,12(2), 53-102. 데리다(배지 선 옮김). 2019. 『용서하다』, 서울: 이숲.

민병로·김남진. 2015. 「5·18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에 관한 대법원 판결 분석」, 『민주주의와 인권』, 16(2). 61-10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997. 『전두환, 노태우 등 5·18관련자들에 대한 사면관련 공청회』, 서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박광현. 2014. 「대통령 사면권의 정당성과 한계」, 『법학연구』, 17(3), 331-355.

박명규. 2018. 「평화와 화해: 책임정치와 심정윤리의 간극」, 137-152, 전우택(편),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 서울: 명인문화사.

박명림. 2019. 「정의의 회복과 과거 극복의 완전성의 문제: 거창사건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42, 39-70.

손운산. 2004. 「치료, 용서 그리고 화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35(1), 241-283.

송에스더. 2020. 「중대한 인권침해시의 배상 정의에 관한 이론적 고찰: 이행기 정의의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20(2), 79-127.

신응철. 2018. 「용서(Forgiveness) 논쟁 다시 보기」, 『철학·사상·문화』 27, 106-127.

오유석. 2022. 「한나 아렌트에 있어서 화해, 용서 그리고 복수」, 『도덕윤리과교육』 74, 241-266.

윤영돈. 2018. 「융의 분석심리학에서 본 화해와 용서의 문제」, 『철학논집』 54, 79-104.

이재승. 2011. 「화해의 문법 -시민정치의 관점에서」, 『민주법학』 46, 123-158.

임병식. 2022. 「화해와 용서의 실천적 시론」, 『생명윤리와 정책』 6(1), 93-115.

임지현. 2020. 「역사 화해와 용서의 정치: 동아시아의 기억공간에서 폴란드-독일 주교단 편지 다시 읽기」, 『역사학보』 246, 111-152.

전우택 편. 2018. 『용서와 화해에 대한 성찰』, 서울: 명인문화사.

정근식. 2020. 「5월운동의 성과와 한계: 과거청산과 이행기 정의 사이에서」, 『경제와 사회』 126, 12-46.

정근식. 2022. 「이행기 정의와 구술사」, 『구술사연구』 13(2), 121-163.

정근식. 2022. 「한국 국가폭력의 제도적 청산과 기억문화-사죄와 용서를 중심으로」, 49-75, 알렉산더 렌너·최광준 편, 『한국과 독일의 과거청산 과 기억문화』, 서울: 경희대학교출판문화원.

정성관. 2018. 「칸트 철학에서 본 정의와 용서」, 『철학논집』 54, 31-51.

정일영. 2020. 「국가폭력 이후의 사면: '가해자의 관용'과 '피해자의 용서': 1980-90년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면을 중심으로, 『한국사학사 학보, 42, 77-110.

주재형. 2018. 「용서와 폭력의 교환 경제: 데리다, 장켈레비치, 니체」, 『철학논집』 54, 105-138.



Cárdenas, Manuel, Darío Páez, Bernard Rimé, and Maitane Arnoso. 2015. "How Transitional Justice Processes and Official Apologies Influence Reconciliation: The Case of the Chilean 'Truth and Reconciliation' and 'Political Imprisonment and Torture' Commissions,"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25(6), 515-530.

David, Roman and Susanne Y. P. Choi. 2006. "Forgiveness and Transitional Justice in the Czech Republic,"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0(3), 339-367.

Evans, Matthew. 2018. "A future without forgiveness: beyond reconciliation in transitional justice," International politics 55(5), 678-692. Grey, Sam. 2019. "Returning to the Source: Revisiting Arendtian Forgiveness in the Politics of Reconciliation," Theoria (Pietermaritzburg), 66(161), 37-65.

Hazan, Pierre. 2006. "Measuring the impact of punishment and forgiveness: a framework for evaluating transitional justice," International review of the Red Cross 88(861), 19-47.

Joram Tarusarira. 2019. "The Anatomy of Apology and Forgiveness: Towards Transformative Apology and Forgive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13(2), 206-224.

Lazare, Aaron. 2004. On ap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Lundy, Patricia, and Bill Rolston. 2016. "Redress for past harms? Official apologies in Northern Ireland,"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human rights 20(1), 104-122.

Suzuki, Masahiro, and Tamera Jenkins. 2023. "Apology-forgiveness cycle in restorative justice, but how?"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29(2), 259-276.

Saunders, Rebecca. 2011. "Questionable associations: The role of forgiveness in transitional justic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ransitional justice 5(1), 119-141.

Seul, Jeffrey R. 2019. "Coordinating Transitional Justice," Negotiation Journal 35(1), 9-30.

Shapland J. 2016, "Forgiveness and restorative justice: Is it necessary? Is it helpful?" Oxford Journal of Law and Religion 5(2), 94-112.

Tavuchis, Nicholas. 1991. Mea Culpa: A Sociology of Apology and Reconciliation. Palo Alto,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Theuerkauf, Ulrike. 2009. "The Politics of Reconciliation in Multicultural Societies by Will Kymlicka and Bashir Bashir (eds.)," Nations and Nationalism 15(2), 361-62.

Wenzel, Michael, Tyler G Okimoto, Norman T Feather, and Michael J Platow. 2008. "Retributive and Restorative Justice," Law and Human Behavior 32(5), 375-389.



필자 소개

정 근 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 졸업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학사

경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명예교수 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mark>통일평화연구원 지식과 비평 (IPUS HORIZON)</mark>은 다양한 분과학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를 평화학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하고 한반도뿐 만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의 지속적 평화 문제에 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제공하기 위한 장이다. 인간, 사회, 국가, 환경 분야에서 평화 의제 에 대한 지식을 탐구하고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갈등과 위기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평화를 구축하고 실천하기 위한 담론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15011)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 173 교육동 9층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Tel: 031-5176-2332 | FAX: 031-624-4751 | Email: tongil@snu.ac.kr